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嘉禮복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 경 순

경북산업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Changes of Royal Wedding Costumes  
Found Out in *Ga-Re-Do-Gam-Eui-Gue*

Kyung Soon Choi

Dept. of Clothing and Design Kyungpook Sanup University  
(1990. 11. 19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yal wedding garments found out in *Ga-Re-Do-Gam-Eui-Gue* during Yi Dynas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wedding garments for kings and princes, as well as for queens and princesses, had a tendency to increase in their kinds and number.
2. The number of 'Sang-bok' (常服) for queens and princesses was decreased about 50% after the publication of *Jeong-Re* (定例).
3. Casual wears for queens and princesses were decreased to the halves in kind, and its number was decreased about 60%.
4. Clothings for court ladies showed changes in kind.
5. Documents about clothings for parents of queen's in wedding ceremony cannot be found in the literatures, such as *Guk-Hon-Jeong-Re* (國婚定例), *Sang-Bang-Jeong-Re* (尙方定例), and *Eui-Gue* published in the 35th and 38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respectively.
6. The number of ornamental bars including wigs was decreased about 50% after the publication of *Guk-Hon-Jeong-Re*.

I. 서 론

가례란 궁중의 왕, 왕세자, 왕세손등의 결혼을 말한다. 가례는 나라의 큰 잔치로 六礼(納采, 納徵, 告期, 冊妃<嬪>, 親迎, 同牢)의 의식절차를 따르며, 사용하는 복식은 「가례도감의궤」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가례도감의궤」는 조선조에 거행한 국혼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현존하는 의궤는 임진왜란 후인 인조 5년에 거행된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부터 광무 10년에 거행된 순종순종비 「가례도감의궤」까지 모두 20例 30冊으로 규장각소장본, 장서각소장본, 파리국립박물관 소장본등이 있다.

국혼이 있을 당시, 국가의 재정, 경제적 여건에 따라 所用되는 복식과 物目의 량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나 매우 화려하고 사치했다.

국혼이 정해지면 가례도감을 설치하여 금혼령을 내림은 물론, 국혼에 사용하는 준비물을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므로 생기는 폐단으로 국민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사치도 조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선조 영조 25년에 혼인 사치를 배제하고 근검 절약의 의도로 「국혼정례」를 편찬하고, 2년 후인 영조 27년에 婚儀의 사치와 의복의 무절제함을 걱정하여 「상방정례」를 편찬하여 제도화 시켰다.

일반적으로 예복은 수시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선조 「가례도감의궤」에는 복식의 종류 및 수량, 직물의 수급 방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임진왜란 후 거행한 가례복식과 부수적으로 따르는 궁녀복식의 종류 및 수량변화를

<표 1> 조선조 가례도감의궤

의궤	연대	구분	책수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인조 5년(1627)	세자빈	1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인조 16년(1638)	왕비	1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효종 2년(1651)	세자빈	1
肅宗仁敏后嘉禮都監儀軌	현종 12년(1671)	세자빈	1
肅宗仁顯后嘉禮都監都廳儀軌	숙종 7년(1681)	왕비	1
肅宗仁端懿后嘉禮都監儀軌	숙종 22년(1696)	세자빈	1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숙종 28년(1702)	왕비	1
景宗宜懿后嘉禮都監儀軌	숙종 44년(1718)	세자빈	1
莊相獻敬后嘉禮都監儀軌	영조 20년(1744)	세자빈	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영조 35년(1759)	왕비	2
正祖孝懿后嘉禮廳儀軌	영조 38년(1762)	세손빈	2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순조 2년(1802)	왕비	2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순조 19년(1819)	세자빈	2
憲定孝定后嘉禮都監儀軌	현종 10년(1844)	왕비	2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고종 3년(1866)	왕비	2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고종 19년(1882)	세자빈	2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광무 10년(1906)	황태자비	2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서 수량은 의복의 벌수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현인 「가례도감의궤」<sup>2)</sup>를 중심으로 「국혼정례」<sup>3)</sup> 「상방정례」<sup>4)</sup>와 비교 검토하여 가례에 사용한 복식의 실태를 분석해 본다.

양정례를 의궤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선조에 유일하게 가례복식에 관한 내용이 제도화 되어 있는 문헌이며 영조조의 혼인 사치배제와 근검절약을 공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주요문현인 「가례도감의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이다(표 1). 「국혼정례」 편찬 이전의 의궤에는 法服과 衣對의 구분이 없으므로 兩定例를 기준으로 구분했고 衣帽를 常服과 平常服으로 구분함에는 「한국복식사연구」를 참고했다.

여기서 사치배제, 근검절약등이 복식의 종류 및 수량 뿐만 아니라 재료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각종 物目의 질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에 밝혀 볼 예정이다.

## II. 복식의 종류 및 수량 변화

### 1. 王·왕세자·왕세손복식 (표 2)

왕·왕세자·왕세손복식에서 큰 변화는 없다. 法服 및 衣對의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살펴본다.

「국혼정례」「상방정례」(이하 兩定例라 칭함)의 王 법복은 冕服, 平天冠, 赤襪, 赤鳥과 絳紗袍, 遠遊冠, 赤襪, 赤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兩定例 전기(이하 양정례 편찬이전은 전기, 편찬 이후는 후기로 칭함)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왕세자 예복은 冕服, 赤襪, 赤鳥, 袞龍袍, 加文刺, 翼善冠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국혼정례」에는 加文刺가 생략되었다. 여기서 전기에는 冕服이 王 가례 때는 없고, 세자 가례에는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王이 冕服을 입지 않고 가례를 거행했다고는 믿기 어려우므로 王이 평소에 제복으로 사용하던 冕服을 사용했을 가능성 이 높다. 또한 1681년, 1702년 의궤에는 物目單子 끝부분에 '以上付標全減'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모두 생략하였는데 아마도 평소에 사용하던 예복을 그대로 가례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 2년에 거행한 顯宗明聖后 「가례도감의궤」에는 翼善冠을 翼蟬冠으로 小鳥巾은 小鳥冠으로 기록하고 있다. 1627년, 1651년, 1671년, 1696년의궤에는 團領가

&lt;표 2&gt; 왕·왕세자·왕세손 법복과 의대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례 구 분	세자	왕	세자	세자	왕	세자	왕	세자	왕	세자	왕	세손	왕	세자	왕	왕	세자	황태자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상**	국·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法衣	冕服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平天冠	1							1	1	1	1	1	1	1	1	1	1	
	赤襪							1	1	1	1	1	1	1	1	1	1	1	
	赤舄								1	1	1	1	1	1	1	1	1	1	
	絳紗袍	1	1							1	1	1	1	1	1	1	1	1	
	遠遊冠	1	1							1	1	1	1	1	1	1	1	1	
	赤襪									1	1	1	1	1	1	1	1	1	
	赤舄									1	1	1	1	1	1	1	1	1	
	袞龍袍										1	1	1	1	1	1	1	1	
	加文刺	2		1	1		1		1			1						1	
	翼善冠	1		1	1		1		1			1		1			1	1	
衣對	襦天益	2	1								1	1	1	1	1	1	1	1	1
	襦襄肚	3	1	3							1	1	1	1	1	1	1	1	1
	腋注晉	1	2								2	2	2	2	2	2	2	2	2
	長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短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把持	2		2								1	1	1	1	1	1	1	1
	襦把持		1									1	1	1	1	1	1	1	1
	短把持		1									1	1	1	1	1	1	1	1
	頭冕							1		1	1	1	1	1	1	1	1	1	
	笠	1		1	1					1	1	1	1	1	1	1	1	1	
	綢巾	2	1	2	2		2		2	1	1	1	1	1	1	1	1	1	
	小鳥巾	1		1	1		1		1										
	靴	3		2	2				3	1	2	2	2	2	2	2	2	2	
	鞋	1		2	2		1		1		1	1	1	1	1	1	1	1	
	團領	1		1	1		1		1										
	帽子			1															
계	종류	18	10	14	9	0	8	0	11	7	19	16	19	14	19	16	19	17	19
	수량	26		21	12		9		14	8	21	18	21	16	21	18	21	19	21

\*犬殿衣對는付標全減으로 기록하고 있음.

\*\*「國혼정례」「상방정례」(이하 동일함)

내에 袞龍袍次를 포함하여 加文刺次도 함께 기록한다.  
 이는 형태면에서 단령과 袞龍袍가 서로 비슷하고, 아직 정돈되어지지 않은 시기라 두 가지 명칭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의 세자 가례에는 준비했으나 왕 가례에 생략된 것은 冕服, 加文刺, 翼善冠, 笠, 小鳥巾, 靴, 鞋, 團領 등 8종류이다. 이 가운데 후기에 加文刺, 笠, 小鳥巾은

없어지고, 團領은 袞龍袍次로 바뀌었다.

후기에는 「국혼정례」의 제도에 따라 거행하였는데 冕服을 왕·세자·세손등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平天冠, 絳紗袍, 遠遊冠은 왕 가례에만 사용하고 세자와 세손은 袞龍袍, 翼善冠을 사용토록 한다. 하지만 衣對는 세손의 袞襄肚와 短衫兒만 생략하고 그 이외는 모두 같다. 세손 가례는 조선조 전 의례를 통해 영조 38년에 거행한 正組

孝懿后 가례 뿐이다. 兩定例에 제도화한 내용보다 적은 物目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왕, 왕세자, 왕 세손 법복 및 의대는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종류나 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며, 이것은 전기에 비해 체계화된 면을 보였다. 사실 종류나 수량만으로 증감을 평가한다는 것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국 혼에 물물을 새로 준비하는 것과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준비했다고 본다면 사치나 근검 절약의 척도를 달리 할 수 있겠다.

## 2. 妃·嬪복식

### 1) 法服<표 3>

1627년, 1651년, 1671년 가례에는 「국조오례의」의 종류보다 적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 탓으로 여겨진다. 전후기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며 1844년 가례 이후 고정화되는 경향이다.

翟衣는 전 의궤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別衣, 內衣 中單은 翟衣 안에 반혀 입는 속옷으로, 특히 中單 1906년 황태자 가례에 처음으로 나타난 명칭이다. 189년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라 칭하면서 복의 명칭도 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例의 복식 1906년 의궤에 몇 가지 더 나타난다. 別衣는 전기에 4체에만 나타나고, 1718년, 1744년의궤에는 '八衣'로 록하고 있다. 兩定例에는 '剃'로 기록되어 있지만, '팔'로 발음하는 것은 같다. 여하튼 别衣, 剃衣, 八衣는 모두 같은 의복일 것이다. 兩定例의 妃法服에는 别衣, 內衣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嬪法服과 「國朝五禮儀」, 1759년, 1762년의궤에는 없다. 그러나 1902년의궤부터 국末까지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

裳은 兩定例 편찬에서부터 빠짐없이 나타나 있는데, 1638년, 1906년 의궤에는 裳이 없고 裙으로 기록하고 있다. 1638년의궤에 花紋鴉青裙一件次 花紋鴉青匹段一匹

<표 3> 비·빈 법복에 사용한 의복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비	비·빈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비	빈	태자빈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상	오 <sup>(6)</sup>	국·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翟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別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內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蔽膝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大帶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綏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霞帔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裳繡					1		1			1		1	1	1	1	1	1	1	1	1
面紗	1					1		1		1		1	1	1	1	1	1	1	1	1
襪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佩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圭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玉帶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鸞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背子		1																		
大衫		1			1															
祫大衫	1					1		1												1
中單衫							1													1
裙								1												1
종류	7	13 (14)	10	10	12	13	14	14	12	15	11	11	10	13	12	13	15	15	15	16

内拱監項紗絹24尺, 1906년 의궤에는 綠選裙前三後四 紅匹段34尺 内拱白方紗紬一匹로 되어 있다. 또 裳에 대간 기록은 1681년 의궤에 裳前三後四次 藍花紋匹段33尺 尺, 内拱은 없다. 1906年 의궤에는 裳前三後四次 藍鄉畿34尺 内拱白方紗紬24尺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욱기 裳과 裙이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1638년, 1906년의 裳과 裳은 같은 제도라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영조조를 전후하여 법복으로 사용한 의복의 종류는 전기보다 후기에 와서 체계화된다. 그러나 예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편찬한 「국혼정례」보다는 「국조오례의」에서 더 검소한 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격식은 갖추되 질이 겸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 2) 衣對

조선조 「가례도감의궤」에는 法服과 衣對가 있으며, 의대에는 常服과 平常服이 포함되어 있어 종류가 많다. 상복과 평상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이상 평상복은 저고리, 치마, 속옷, 鞋등으로 한정했고 상복과 평상복 이외의 것은 기타로 분류했다.

### ① 常服<표 4>

單長衫, 圓衫, 袖襖, 袱裙, 袪裙 등은 전기에만 사용한 것들이며 후기에는 없다. 새로 등장한 명칭들은 盖襖, 四祫襖子, 綠選襖子, 鞠衣 등이다. 이 가운데 盖襖과 盖襖라는 명칭으로 기록되면서 후기에는 같은 의궤내에서 위 두 가지 명칭을 모두 사용한다. 앞의 기록에는 袥襖, 뒤에는 盖襖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칭은 같은 형태의 옷으로 보인다.

露衣는 1759년 의궤만 제외한 모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흥배 불인 袪長衫은 妃·嬪 모두 착용하고, 袱長衫은 후기부터 妃만이 착용한다.

單長衫은 1638년, 1702년에만 나타나고 兩定例에도 없다.

洗手長衫은 훌옷인데, 천의 소요량으로 보아 길고 큰 옷으로 妃가 사용한다. 이것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세수할 때 착용하던 옷이 아닌가 한다.

이같이 長衫류는 妃가 착용하는데 비해 圓衫은 嬪이 착용하고 圓衫도 전기에 嬪이 착용했다.

이상에서 常服에 속하는 衣對의 종류 및 수량이 전기

<표 4> 상복에 사용한 의복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	빈		비		빈		비		빈		비		빈		비		빈		비		빈		태자비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상	국·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端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胸背襖長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執長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單長衫		1																							
洗手長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圓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團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祫襖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蓋襖																									
四祫襖子																									
綠選襖子																									
鞠衣																									
中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祫裙	1		1	1		1		1		1	1														
袜裙	3	2	1	1	1	1		1		1	1														
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종류	8	9	9	9	6	7	6	8	9	7	7	4	4	7	7	7	7	7	7	7	7	7	8		
수량	10	10																							

&lt;표 5&gt; 평상복에 사용한 의복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비	빈	비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비	빈	태자비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	**상	*국	**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赤古里	3	3	3	3		3		3		2	2	2	2	1		2	2	2	2	2	2
襦赤古里		3			2		1			1	1	1	1	1	1	1	1	1	1	1	1
袂赤古里				1																	
短赤古里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襦胡袖	2	2	2	2	1	2				1	1	1	1	1		1	1	1	1	1	1
袂裏衣	2	1	2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單裏衣	2	1	2	2	1	2		2		2	1	1	1	1							
潤汗衫	2		2			2		2		1	1	1	1								
潤衫兒		1		1	1		1								1	1	1	1	1	1	1
衫兒	6	1	3	3	1	3	1	3	3	1	1	1	1		1	1	1	1	1	1	1
赤尗	5		5	5	4	5		5	5												
襦赤尗		3	2		3		1			2	2	2	1	2	1	2	2	2	2	2	2
袂赤尗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鞋	3		2	2	2	2	2	3	2	1	2	2	2	1	2	1	2	1	1	2	2
종 류	9	9	11	9	11	9	7	8	8	9	9	9	9	5	7	9	9	9	9	7	9
수 량	26	16	26	21	19	22	9	21	19	11	12	12	11	6	8	11	12	11	11	9	12

\*「국혼정례」 \*\*「상방정례」

에는 6~10종류, 후기에는 4~8종류이다. 대례복인 범복에 비해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정례편찬 직후에는 4종류로 줄어 들었다.

### ② 平常服<표 5>

평상복은 「가례도감의궤」의 衣對 중 수량변화가 가장 많다. 범복이나 상복에서와 같은 의복제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富와 사치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것이 평상복의 물목이라 생각한다.

赤古里는 전기에 嫫만이 사용하고 妃는 榮赤古里를 사용한다. 후기부터 赤古里는 사용하지 않고 비·빈에 관계없이 모두 榮赤古里를 사용한다.

袂赤古里는 1681년 왕비 가례에 한번 사용했으며, 후기에는 비·빈 모두 사용했다.

短赤古里는 비·빈이 착용하고 榮赤古里보다 소요량이 적게 든다. 이것은匹綬이나 金線을 사용하는데 兩定例 이후 없어진 결로 보면 節儉의 뜻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短赤古里, 短裏衣, 赤尗 등은 전기에 비·빈 모두 사용했으나 후기에는 없다. 이 가운데 赤尗 등은 전기에 비·빈 모두 사용했으나 후기에는 없다. 이 가운데 赤尗는

솜치마가 3벌 袢赤尗 두벌이었는데 후기에 각각 두벌과 한벌로 줄었다.

潤汗衫은 전기에 빈이, 潤衫兒는 妃가 착용한다. 兩定例에는 潤汗衫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후기부터는 두 가지 명칭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즉 한 의궤내의 물목자에는 潤汗衫, 소요량을 기록 할때는 潤衫兒 또는 潤衫兒로 기록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명칭이 동시에 사용된 예는 없으므로 동일형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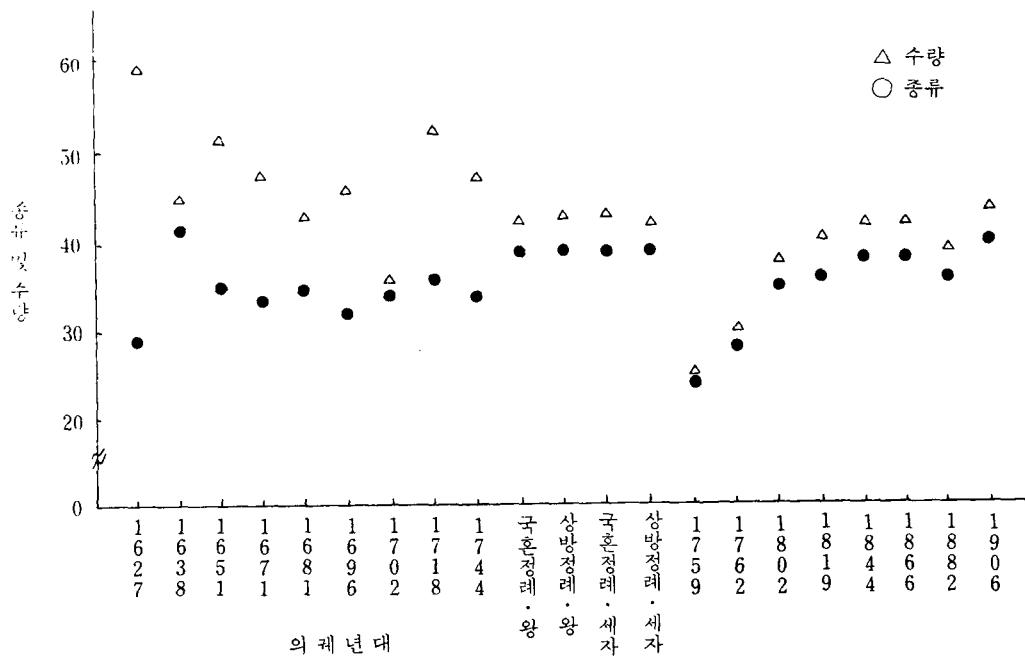
이와같이 의복 전반적으로 두세가지이던 것이 후기는 한가지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의복의 종류 전·후기가 비슷하고, 수량은 약 반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1627년에 26벌이던 것이 兩定例 전·후기인 1759년, 1762년 의궤에는 5벌, 7벌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시대에서도 그 예가 없었으며, 약과 겸소의 효과로 실학적 사고에 의한 시대적 환경전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 ③ 기타<표 6>

1718년 의궤부터 串衣라는 명칭이 나타나면서 國末지 두벌씩 기록되어 있으며, 전기의 汝火가 사라지고 兩定例부터 袢羅兀이 나타난다. 복식의 종류는 兩定例 :

&lt;표 6&gt; 기타 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재 종류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비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빈	비	빈	태자비
162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3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5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7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8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9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0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4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국·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5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6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0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4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6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8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0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景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紩面紗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首紗只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串衣	2	1	2	2	1	2	1	2	2	2	2	2	2	2	2	2	2	2	
帶腰	2	1	2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袴羅凡	2	1	2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帶	2	1	2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海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종류	5	6	5	6	6	3	6	6	5	7	7	5	5	7	7	7	7	7	
수량	8		7	8		4		9	7	8	8		6	8	8	8	8	8	



(그림 1) 비·빈 법복과 의대의 종류 및 수량 분포도.

찬에서 오히려 한두가지 늘어나며 수량은 줄어들기도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법복 및 의대의 전체적인 종류와 수량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결과이다.<그림 1>

종류는 兩定例에서 증가하였으며 후기에는 兩定例보

다 줄여서 거행했다. 특히 兩定例 편찬 직후에는 최하위로 줄어 들었다. 수량에서는 兩定例에 간소함이 나타나고 역시 兩定例 직후에는 가장 적은 수량을 보여준다. 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兩定例보다 한두가지 적은 수량이다.

&lt;표 7&gt; 상궁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례 종류 년도	빈	비	빈	빈	빈	비	빈	빈	비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비	빈	태자비
	1627	1638	1651	1671	1696	1702	1718	1744	국	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豁 衣	1	1		1		1												
單 長 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赤 古 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祫赤古里		1				1			1	1	1	1	1	1	1	1	1	1
赤 尔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襦 赤 尔		1				1			1	1	1	1	1	1	1	1	1	1
長 赤 尔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潤 汗 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潤 衫 兒									1	1			1	1	1	1	1	1
單 衫 兒			1			1		1										
衫 兒	1	1	1	1	1	1	1	1										
袜 裙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帶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涼 耳 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鞋	1	1	1	1	1	1	1	1										
溫 鞋									1	1	1	1	1	1	1	1	1	1
羅 犀									1	1	1	1	1	1	1	1	1	1
汝 火	1	1	1	1		1												
汝火纓子	2		2	1	3	1	1											
女 帽			1		1													
甫 乙 只	1		1	1	1		1											
甫乙裡(裏)		1				1												
종 류	15	14	16	15	13	14	11	12	10	9	11	7	11	11	11	11	11	11
수 량	16		17		15													

\*『국혼정례』(이하 동일함)

\*\*『상방정례』(이하 동일함)

### 3. 宮女복식

궁녀는 尚宮 4명·阿之 1명·侍女 4명·乳母 1명, 騎行內人 4명, 步行內人 4명, 本宅(宮)內人 2명으로 구성한다. 궁녀복식은 이들이 가례가 거행될 때 착용하는 옷이다. 尚宮은 전기 의례 중, 1627년은 尚宮 4명 阿之 1명이고, 1638년, 1681년은 阿之 1명이 없어지고 尚宮만 4명이다. 위 세의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尚宮 3명 阿之 1명이다. 그러다가 兩定例에 阿之는 없어지고 尚宮 4명으로 제도화된다. 「尚方定例」에는 本宅內人の 衣服이 생략되었지만 후기의 궁녀복식이 「국혼정례」를 기준으로 거행하여 본색내인의복이 포함되어 있다.

### 1) 尚宮·阿之, 侍女·乳母服飾<표 8>

尚宮·阿之복식 중 1627년 의례에만 豁衣가 割衣(할의)로, 1638년에는 涼耳掩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기에 착용되다가 후기에 사라진 의복은 豁衣, 赤古里, 赤尔, 單衫兒, 衫兒, 鞋, 汝火, 女帽등이다. 이 중, 전기에 赤古里는 嬪 가례에 祫赤古里는 妃 가례에 착용하다가 후기에는 모두 祫赤古里를 착용한다. 赤尔 역시 妃 가례에는 儻赤尔, 嬪 가례에는 赤尔를 입는데, 후기에는 비·빈 가례에 관계없이 儻赤尔를 입는다. 전기에 潤汗衫, 單衫兒, 衫兒를 골고루 사용하던 것이 후기에는 潤衫兒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1844년, 1882년, 1906년 의례에는 潤汗衫兒로 기록되어 있다. 「국혼정례」에

&lt;표 8&gt; 시녀·유모 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	비 1627	비 1638	빈 1651	빈 1671	빈 1696	비 1702	빈 1718	빈 1744	국 상	비 1759	비 1762	빈 1802	비 1819	비 1844	비 1866	빈 1882	비 1906	태자비
豁衣	1	1	1	1	1	1	1	1										
長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赤古里	1		1	1	1		1	1										
祫赤古里			1			1			1	1	1	1	1	1	1	1	1	1
赤苧	1		1	1	1		1	1										
襦赤苧		1				1			1	1	1	1	1	1	1	1	1	1
潤汗衫	1									1								
潤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長赤苧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帶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涼耳捲	1	1	1	1						1	1	1	1	1	1	1	1	1
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鞋	1	1	1	1	1	1	1	1										
溫鞋									1	1	1	1	1	1	1	1	1	1
羅兀									1	1	1	1	1	1	1	1	1	1
汝火	1	1			1		1											
汝火纓子	2			2	1	1		1										
女帽			1			1												
甫乙只	1			1	1	1		1										
甫乙裡(裏)		1					1											
종류	14	13	13	14	12	12	10	12	11	9	11	8	11	11	11	11	11	11
수량	15			14														

潤衫兒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상방정례」에 潤汗衫으로 기록하다가 潤汗衫兒라는 복합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비·빈복식에서 潤汗衫, 潤衫兒가 복합적으로 사용한 예와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상궁복에서는 衫兒까지 사라졌다.

鞋는 후기부터 溫鞋로 바뀌어져 사용하고 汝火도 羅兀로 명칭이 바뀌어 나타나는데 이도 비·빈복식에서 袴羅兀로 바뀐 것과 같은 현상이다.

상궁복의 종류는 전기에 14종류이던 것이 후기에 11종류로 줄었고 1762년 의궤에는 7종류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세손 가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같이 상궁복식의 종류, 및 수량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兩定例 편찬 이후이며 1906년 가례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국혼정례」의 편찬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녀·유모복식<표 8>은 상궁복과는 달리 豁衣가 전기에 빠짐없이 사용되었고 長衫과 같이 사용하다가 후기에는 長衫만 사용한다. 이외의 복식은 상궁복과 같다.

## 2) 騎行內人복식<표 9>

長衫이 전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赤古里는 상궁처럼 후기에 모두 襪赤古里를 착용한다. 전기에는 赤苧 2벌이었으나 후기는 赤苧, 榮赤苧 각 한벌씩으로 분리하였다. 특히 長赤苧는 「상방정례」에 赤苧 대신 기록하고 있는데 1906년 의궤에만 사용하고 있다. 조선조 英祖朝까지 嫔 가례에는 鞋를 신고 妃 가례에는 溫鞋를 신는데 純祖朝 이후는 모두 溫鞋를 신는다. 이는 보행, 본색내인도 같다.

후기에 종류는 늘어나기도 하지만 수량은 같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lt;표 9&gt; 기행내인 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빈	비	빈	태자비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	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長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赤古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祫赤古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赤尗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襦赤尗										1	1	1	1	1	1	1	1	1	1	1
長衫尗											1									1
袜裙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帶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羅兀										1	1	1	1	1	1	1	1	1	1	1
汝火					1		1			1	1	1	1	1	1	1	1	1	1	1
汝火纓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涼耳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鞋	1		1	1		1		1		1	1		1		1		1	1	1	1
溫鞋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甫乙只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甫乙裡(裏)		1																		
종류	11	11	10	10	11	10	11	10	10	11	11	11	10	11	11	11	11	11	11	11
수량	12	12	11	11	12	11	12	11	11											

&lt;표 10&gt; 보행내인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빈	비	빈	태자지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	상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赤古里	1	1	2	1	1	1	1	1	1											
祫赤古里										1	1	1	1	1	1	1	1	1	1	1
赤尗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襦赤尗																				1
長赤尗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單赤尗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涼耳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鞋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溫鞋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종류	7	7	6	6	7	6	7	5	6	7	2	7	6	7	7	7	7	7	7	7
수량					7															

&lt;표 11&gt; 본택내인복식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빈	비·빈	비	세손비	비	빈	비	비	빈	태자비
	1627	1638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국	1759	1762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赤古里	2	2	2	1	2	2	2	2										
短赤古里	1									2	2	2	2	2	2	2	2	2
祫赤古里										1	1	1	1	1	1	1	1	1
單赤尗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衫兒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鞋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溫鞋		1			1		1			1	1	1	1	1	1	1	1	1
종류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수량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lt;표 12&gt; 비·빈부모전의복

부모	구분 의궤 종류 년도	빈	빈	빈	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비	비	빈	태자비
		1627	1651	1671	1681	1696	1702	1718	1744	1802	1819	1844	1866	1882	1906		
父	團領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加文刺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帖裏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裏肚	3	3	3	2	3	3	3	2	3	3			3	3	3	3
	衫兒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把持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종류	1	6	6	6	6	5	6	6	5	6	6	6	1	6	6	6
	수량	2	13	13	13	12	11	13	13	8	13	13	2	13	13	13	13
母	赤古里	1	1	1	1	1		1	1	1	1	4	1	1	1	1	1
	懿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加文刺																
	赤尗	1	1	1	1	1		1	1	1	1	14	1	1	1	1	1
	袜裙											5		5	5	5	5
	澗汗衫											5		5	5	5	5
	帶											5		5	5	5	5
	羅兀											5		5	5	5	5
	涼耳掩											5		5	5	5	5
	종류	3	3	3	3	3	0	3	3	3	3	4	7	3	4	4	4
	수량	3	3	3	3	3	0	3	3	3	3	4	43	3	4	4	4
계	종류	4	9	9	9	9	5	9	9	8	9	10	8	9	9	10	
	수량	4	16	16	16	15	11	16	16	11	16	17	45	16	17		

\*1638년, 1759년, 1762년 의궤와 「국혼정례」, 「상방정례」에는 기록없음.

### 3) 步行內人, 本宅內人복식<표 10, 11>

襦赤尗는 1906년에만 사용하고 赤尗, 長赤尗, 短赤尗가 전 의궤에 나타나는데 이 중 短赤尗는 상궁·아지·시녀·유모 복식으로는 사용처 않았다.

종류 및 수량변화는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두가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상방정례」에는 보행내인복식이 두 종류만 기록되어 있으며, 본색내인복식은 없다. 그러나 실제 가례에는 「국혼정례」의 제도를 따라 거행했다.

이와같이 궁녀복식 중에서도 계급이 높을수록 수량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낮은 계급의 궁녀는 기본적인 예복만 착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 4. 妃·嬪父母前衣服<표 12>

父母前衣服은 비·빈의 친정 부모에게 보내는 물목단자이다. 전기에는 9종류에 16별 정도의 의복을 보냈으며, 1802년 의궤부터도 비슷한 종류와 수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兩定例에는 비·빈부모전 의복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1759년, 1762년 의궤에도 없다가 1802년에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국혼정례」 편찬 의도에 의한 효과라 생각할 수 있다.

### 5. 髢髮 및 首飾<표 13, 14>

전 의궤에서 머리에 쓰는 冠이 없다. 五札儀에 翟衣를 입고 首飾을 하는데, 수식은 이미 國俗을 따르니<sup>7)</sup> 髢髮로 冠을 대신하는 것이다.

가례에 사용하는 髢髮의 량은 68丹 5箇부터 5丹5箇까지이다. 이 5丹5箇는 英祖38년에 거행한 正組孝懿後 가례에 사용한 량으로 전 의궤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세손가례에 사용한 것이다. 가장 많은 량은 仁祖16년에 거행한 仁祖莊烈后 가례에 68丹5箇를 사용한 것이다. 「국혼정례」에 비·빈 모두 10丹5箇로 규정한 후 國末까지 세

<표 13> · 髢髮의 량

의궤년대	비	빈	세손빈	비고
인조 5년 1627		40丹		
인조 16년 1638	68丹			
효종 2년 1651		48丹		
현종 12년 1671		48丹		
숙종 7년 1681	20丹			
숙종 22년 1696		48丹		
숙종 28년 1702	20丹			
숙종 44년 1718		48丹		
영조 20년 1744		48丹		
영조 25년 1749	10丹	10丹		
영조 35년 1759	10丹			국혼정례
영조 38년 1762			5丹	
순조 2년 1802	10丹			
순조 19년 1819		10丹		
현종 10년 1844	10丹			
고종 3년 1866	10丹			
고종 19년 1882		10丹		
광무 10년 1906		10丹		

<표 14> 髢의 종류 및 수량

착용자 의궤 종류 년도	빈	비	빈	빈	비	빈	비	빈	빈	비·빈	비	세손빈	비	빈	비	빈	비	빈	태자비
長	1	2	1	6	1	6	1	6	6	2	2	2	2	2	2	2	2	2	2
大		10		9	5	9	5	9	9	5	5	3	5	5	5	5	5	5	5
中	10		2	5	2	5	2	2	5	5	3	5	5	5	5	5	5	5	5
次中	10		12	5	12	5	19	12											
小	4		9	3	9	3	9	9	3	3	2	3	3	3	3	3	3	3	3
禿小	5		5	4	5	4	5	5	4	4	2	4	4	4	4	4	4	4	4
次小	5		7	3	7	3		7	3	3	2	3	3	3	3	3	3	3	3
小小									5	5	3	5	5	5	5	5	5	5	5
종류	1	7	1	7	7	7	6	7	7	7	7	7	7	7	7	7	7	7	7
수량	1	45	1	50	26	50	26	50	50	27	27	17	27	27	27	27	27	27	27

손빈 가례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髻髮에 장식으로 사용하는 簪의 수량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전 의궤에 모두 7종류를 사용했으며 길이는 수치로 나타낸 것과 명칭으로 나타낸 것이다. 1671년, 1696년 1744년에는 길이로 나타내는데, 긴 것부터 1尺3寸, 9寸, 8寸, 5寸5分, 5寸, 5寸5分無頭, 4寸無頭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1718년에만 1尺6寸, 1尺4寸5分 1尺2寸8分, 9寸, 8寸1分, 6寸5分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의 4의궤를 제외한 모든 의궤에는 長簪, 大簪, 中簪, 次中簪, 小簪, 烦小簪, 次小簪, 小小簪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내며 「국혼정례」부터 次中簪이 없어지고 小小簪이 나타난다. 종류는 전후기 모두 비슷하고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약 반으로 줄어든다.

### III. 맷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조 가례에 사용한 복식의 실태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王, 王세자, 王세손 法服 및 衣襍, 妃·嬪의 法服 등은 종류 및 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礼의 격식을 갖추기 위한 의미가 더 커졌을 것이다.

2. 妃·嬪의 常服은 兩定例 편찬 직후의 가례에는 종류 및 수량이 약 반으로 줄었다.

3. 평상복은 양정례 편찬 직후에 종류가 약 반으로 줄면서 수량도 약 1/3이하로 감소한다. 후기 전반적으로 수량이 약 반이하로 줄어들어 가례복식 가운데 가장 변화가 많으며 사치배제, 균검절약의 의미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다.

4. 궁녀복식은 尚宮·阿之복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侍女, 乳母, 騎行內人복식의 순으로 수량변화가 나타나고 종류는 변화없으며, 步行內人, 本宅內人복식은 전혀 변화없다. 궁녀중에서도 아래계급 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예복만 입은 탓이다.

5. 妃·嬪父母前衣服은 「국혼정례」「상방정례」英祖 35년, 英祖38년 의궤에서 생략되었으므로 사치배제와 절약의 의미라 여겨진다.

6. 髻髮과 簪은 「국혼정례」 편찬 이후 종류는 그대로이나 수량이 반으로 감소하여 사치배제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격식을 차리기 위한 제도화 때문이며, 제도화의 근본정신은 사치배제, 균검, 절약을 밀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례복식의 종류 및 수량변화는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병선, 「朝鮮朝의 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34, 1985.
- 2) 역대 「가례도감의궤」 규장각본, <표 1> 참조.
- 3) 「國婚定例」 영조25년, 규장각본.
- 4) 「尚方定例」 영조27년, 규장각본.
- 5) 류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51~458, 1980.
- 6) 「國朝五札儀」,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권 之1, 길례, 왕비예복제도, 王世子빈예복제도, 경문사, 642~644, 1979.
- 7) 「선조실록」 권 152, 선조 35년 7월 경신, 嘉禮都監啓日 …(중략)…五札儀有翟衣加首飾之文首飾既從國俗磨鍊